



글렌데일 공공질서 번호. 2020-03

글렌데일 비상사태 권한

발급일: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부의 조치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

2020년 3월 16일에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질병2019(코로나19)으로 인해 커지는 우려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하는 여러가지 결말이 있게 된다. 확진자 수는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확산되므로 일반인들은 어디든지 가능한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3월 16일에 시의회는 특정 공공시설의 출입을 폐쇄하고 제한할 것을 명령하였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과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노력을 배로 강화하였다. 시정부인 우리가 커뮤니티 확산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비상서비스국장의 비상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글렌데일 시 전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근접한 거리에 머물러 있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일련의 일시적 규제를 명령하였다.

권고받은 강제적 사업 폐쇄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월세, 모기지, 공과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사업체의 능력이 저하되었으나, 상업용 임대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것은 공공위생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제, 글렌데일 지방자치법의 2.84조에 의거하여 허가된 공권력으로, 비상서비스국장은 오늘밤 11시59분부터 발효하고 2020년 3월 31일 밤 12시까지 유효한 다음 명령을 발표한다.

1항. 세입자가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으로 월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증명하면, 글렌데일 시에서 지역적 비상시기에 연방정부 주택선택바우처프로그램(섹션8)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정부기관의 월세를 지원받는 세입자와 주거용이나 상업용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는 퇴거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 폐쇄, 혹은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감소, 학교 휴교로 인한 육아 비용, 코로나19로 걸린 병과 관련된 헬스케어 비용, 혹은 코로나19로 병든 세입자의 가족원의 간병, 혹은 정부가 명령한 비상사태 조치로 발생한 적절한 지출이 포함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합법적으로 부과된 월세를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지역적 비상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까지 세입자가 연체된 월세를 납부할 시간이 있게 된다. 세입자는 이 조항에서 정한 보호법을 퇴거소송에서 긍정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역적 비상기간의 대기상태에서 유효하다.

2항. 이 명령은 2020년 3월 31일 이전까지 연장될 수 있다.